

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7. .

발 의 자 : 문 외 숙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-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나.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

6. 예산 수반사항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 : 해당없음

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명 이내의” 을 “30명 이내의” 로 한다.

제6조 중 “연임할 수 있으며” 를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6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연임할 수 있으며</u>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30명 이내의</u>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임기) ----- ----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</u>,-- -----</p>

붙임 1

심사보고서

■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의정자문위원회의의 구성원을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, 또한 위촉위원의 연임 임기를 1회로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2

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

■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원발의 의안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4. 작성자

- 하남시 의회사무과 행정7급 신국철

붙임 3**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**

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: ‘의견없음’

붙임 4**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**

○ 해당없음

참고 1**관계법령 발췌서**

해당없음

참고 2**현행 규정**

해당없음